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9. 18.(수) 09:31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1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개최하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대부분의 안건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해 오신 전임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오신 결과,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개선되고 언론 자유지수가 높아지는 등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에 저도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어 4기 위원회의 정책과제들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아름다운 합의제 전통을 살리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4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2019-45-268)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OBS경인TV(주)의 2019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OBS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관련 현황 및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2018년까지 OBS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현황입니다. OBS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방송 고시 제7조의2제1항제1호, 즉 '필수지정사업자로서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상태 및 자본잠식률 7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편성의무를 경감받았고, 2018년에는 고시 개정에 따라 5년 중 3년간 적자 요건에 해당하여 역시 편성의무를 경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아래 OBS 경영 현황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5년 중 적자상태가 2년간만 발생하여 고시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경감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에 OBS는 장애인방송 고시 제7조의2제1항제4호, 즉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통위에 경감을 신청하였습니다. OBS는 건축 경영을 통해 소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영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타 지역방송은 장애인방송의 상당 부분을 중앙네트워크 수중계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으나, OBS는 수중계가 없어 편성비율 및 제작비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폐쇄자막의 경우 100%에서 55%, 화면해설은 10%에서 6%, 한국수어는 5%에서 3.5%로 경감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고시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로 현재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학계,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OBS는 보장위에 2018년도 편성의무 경감비율인 폐쇄자막 50%, 화면해설 5.5%, 한국수어 3%의 경감요청안을 제시하였으나 보장위는 OBS가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의무비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개선된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OBS는 전년도보다는 다소 상향된 폐쇄자막 55%, 화면해설 6%, 한국수어 3.5%의 경감요청안을 보장위에 제시하였습니다. 보장위는 재논의를 통해 OBS가 제시한 폐쇄자막 55%, 화면해설 6%, 한국수어 3.5% 등으로 OBS의 2019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다만 2022년까지는 편성비율이 필수지정사업자, 즉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인 폐쇄자막 100%, 화면해설 10%, 한국수어 5%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장위의 의견 원문은 박스 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OBS 장애인방송 편성 경감조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55%, 화면해설 6%, 한국수어 3.5%'로 한다입니다. <제1안>은 보장위에서 인정한 2019년 OBS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비율을 그대로 수용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2안>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60%, 화면해설 7%, 한국수어 3.5%'로 한다입니다. <제2안>은 보장위에서 제시한 연도별 편성의무 확대 방안, 즉 2022년까지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2019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현행 고시 비율의 70% 수준으로 경감하는 안입니다. 4쪽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까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편성을 위해서는 2019년 70%, 2020년 80%, 2021년 90% 정도로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쇄자막의 경우 연내 편성 가능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의무를 10% 추가 감경하여 60%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60%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OBS가 9월 18일 이후 편성해야 하는 폐쇄자막 방송비율은 7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1안>과 <2안>의 공통되는 경감조건

입니다.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방송을 일상적 시간대에 편성할 것,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 질적제고를 위한 자체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이 늘어날 경우 자칫 실제 시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심야시간대 편성되거나 신규 제작물보다는 재방송을 통해 비율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OBS에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신청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관련 규정 등 <붙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4>번 제일 아래 참고표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이 되지 않을 경우 자막 방송의 경우 부산MBC의 5배, KNN의 3배의 제작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자막 방송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갑니까? 3배, 5배 이렇게만 표시하니깐 상당히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아닙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일단 다른 KNN과 부산MBC와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1안>과 <제2안>의 경우에 OBS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 제작비는 총액이 있으면 그것을 해당 방송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매칭비율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방송사가 자체비용을 부담하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OBS는 특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73% 정도 됩니다. 100만원이 들어가면 73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하고, OBS는 27만원 정도 27%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봤을 때 <제1안>과 <제2안>의 총 제작비용 차이는 5,400만원 정도 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1안>으로 갔을 경우에 얼마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제1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총 제작비가 5억 7,600만원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2안>은요?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제2안>은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래서 총 5,400만원 비용이 <제1안>과 <제2안>에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정부지원금을 빼고 OBS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약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비용을 보면 화면해설방송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폐쇄자막 비용과 화면해설방송 비용 분리가 가능합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분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드릴 말씀은 최소한 폐쇄자막 같은 경우 100% 하더라도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OBS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OBS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누적적자와 자본 잠식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경감받아 왔습니다. OBS는 그러나 최근 5년 중 2년 적자로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다시 감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2차례 논의를 거쳐 경감안을 마련해서 건의했고, 사무처도 별도의 경감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1안> 말고 <2안>을 다시 마련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제가 안건 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시다만 어떻게 보면 <제1안>의 경우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견을 가장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긴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상 보장위에서 논의하면서 2022년까지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밝혔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연도의 비율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해마다 균등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견과 '22년까지의 편성의무 목표를 고려하면 조금 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 의견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2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 비율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결국 <2안>은 2022년까지 일반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 비율로 유지하려면 적어도 올해부터 그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제1안>과 <제2안>으로 갈 때 금액 차이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총 제작비용의 차이는 5,4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중에서 정부지원금이 3,900만원 정도가 전년도 기준의 매칭비율로 했을 때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1,500만원 금액에 대해서 OBS가 실질적으로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실제 OBS가 부담하는 금액은 1,500만원 정도 수준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제1안>과 <제2안>의 경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제2안>으로 가더라도 OBS가 비용부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의 연차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방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2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통 경감조건으로서 장애인방송을 일상적인 시간대에 편성할 것, 그리고 재방비율을 줄일 것 등의 조건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에서 추가 의견으로 제시한 2022년까지의 필수지정사업자 편성비율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OBS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민방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는 방송입니다. OBS가 주장한 대로 수중계를 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있었던 주어진 상황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경영상황이나 다른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경영상황도 예를 들었는데 이 경영상황은 조금 전에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흑자가 나고 있고 게다가 CPS 협상 때문에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현재 35억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새로 CPS 협상 때문에 그와 같은 수익이 별도로 생기는 상황입니다. 또 OBS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할 때는 수중계가 없는 독립 지역방송사의 경우 일부분을 보정해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로 들어 장애인 방송도 수중계가 없는 OBS에 대해서는 특별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난 방송과 장애인방송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도달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재난방송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장애인방송은 그와 같은 한정된 입장이 아니고 방송지역 안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방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OBS에 대해서 별도로 감안해 줄 사항이 재난방송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이 <제1안>, <제2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방송에 관한 건은 이제 OBS에도 충분한 방송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2안>을 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장위원회가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보장 위원회의 의견이 앞으로 확실하게 담보가 되도록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으로 확실히 정하는 것까지 오늘 논의했으면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OBS에 대한 장애인방송의 자막방송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감면해 주는 것이 특혜냐,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혜라고 보기 전에 취약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이런 특혜가 계속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안에는 이 특혜를 거두고 다른 지상파방송과 똑같이 예를 들면 폐쇄자막을 100% 다 실시하라, 이런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OBS에서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흑자의 규모는 아주 소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부상의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이 여전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거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영세한 중소방송사는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폐쇄자막이 100% 방송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마침 보장위원회에서 앞으로 3년 뒤에는 반드시 100%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니 그런 의견을 냈으니까 그것은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마침 <제1안>과 <제2안>의 OBS 자비 부담이

1,500만원 정도 차이라고 하니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2안>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100%를 앞으로 3년 뒤에는 실현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은 이렇게 될 경우 2019년도에 폐쇄자막을 60% 방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60%를 맞추려면 남은 석 달 동안 사실상 약 74% 정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OBS와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액수 차이가 크지 않으니 저도 <제2안>을 찬성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2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쇄자막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에 비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60%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약 74% 정도 폐쇄자막 방송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80%로 올리는 것이 금년 60%에서 내년 80%로 급격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60%대, 앞으로 70%대 그리고 내년에 80%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폐쇄자막비율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의 경우, 특히 지상파방송의 경우 시청자인 국민들에 대한 공적책무 구현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장애인방송을 통해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가 구현해야 할 공적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든 아니면 자본잠식이든 이런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마지막까지도 이런 공적책무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의무를 경감시켜 주지만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있든, 아니면 자본잠식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 계층에 대한 공적책임 부분들은 마지막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고 위원님도 <제2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적용의 엄격성, 중요성 이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약매체 지원의 필요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해서 향후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제2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고사항

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사유입니다. 시청자 방송참여 기반 마련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05년 부산센터의 개관을 시작으로 건립된 7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경과입니다. 2005년에 건립된 부산센터를 시발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센터 등 현재 7개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경기센터가 10월 말에 개관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에는 충북과 세종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역 센터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 건립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센터 건물은 지자체가 확보하여 제공하고, 방송시설·장비는 위원회가 구축하고, 운영비는 방통위 60%, 지자체 40%로 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연간 운영비는 평균 13억원 정도 들고 있으며, 방통위가 7억원을 대고 지자체가 5억원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교육입니다. 주로 학교 미디어 교육과 사회 미디어 교육,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교육으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미디어 교육입니다.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학년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을 보면 학교 미디어 교육 대상은 약 1,706개교로 25만 8,000명이 이를 이수하였습니다. 초·중·고의 방송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송사와 연계한 동아리 미디어 교육 및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 내 미디어 교육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미디어 전문지식과 콘텐츠 제작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점 인증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미디어 교육입니다. 마을미디어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체 생활을 표현하는 미디어를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범사업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에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참여 프로

그램 제작 교육이 되겠습니다. 각 센터별로 시청자제작단을 육성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여 방송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방송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753편에서 2018년 기준 1,681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미디어 교육입니다. 소외계층 미디어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버스를 활용해서 농촌, 산촌, 어촌 등 미디어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45회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한 기능을 요약하면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 권익 증진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기관, 방송사, 소규모 미디어센터, 장애인단체 등과 다양한 방식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 권익증진 허브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방송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대상으로 미디어 활용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사 대상으로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업인의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제작과 라이브방송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 방안 등 청년농업인 스마트 교육 등 협력 사례가 작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센터의 지역사회 협업체계 현황>은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미디어의 수용과 사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미디어 활용 역량이 사회생활하는 데 소통, 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에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방통위와 문체부, 교육부 등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은혜 의원 측이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고, 또 과방위 위원이었던 신경민 의원이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양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방통위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방통위원회와 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부처의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는 미디어 교육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타 부처 미디어 교육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저희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미디어 교육을 특정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부처 간 영역을 종합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에 검토의견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의견을 국조실에 보낸 바 있습니다. 센터의 지역별

불균형도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역에만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운영 또는 구축 예정이어서 미구축된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미디어 교육 서비스 등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미디어 교육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교육분야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서 관련 문헌 연구 및 기초 조사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초안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전으로는 현재 미디어 교육이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시간도 꽤 됐는데 미디어 복지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보편적 미디어 교육 시행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디어 교육 시행 준비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시청자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입법 지원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미디어 교육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타부처 미디어 교육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추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미디어 교육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현재 미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추가 건립은 2025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와 계시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경영기획본부에서 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계획을 이렇게 세우려면 특히 내년에 재단에서 미디어 교육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 **류재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위원님, 종합추진계획은 방통위 중심으로 해서 재단도 참여해서 연구반을 구성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무래도 미디어 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 그리고 이용자들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센터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은 재단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재단에서는 어떻게 의견수렴할 계획입니까?

○ **류재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 지금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재단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방통위와 협의해서 의견수렴 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보고안건은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 개선 방안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담아서 향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본 안건을 접수했으면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 기반 마련과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을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건립해 오고 현재 7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학교, 사회,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상황에 대응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또한 지역미디어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현황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오늘 안건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디어 교육의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오늘 보고의 문제인식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2대 기능인 미디어 교육과 지역 미디어 허브 역할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청자들의 미디어 인식 수준을 높이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센터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미디어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광역단체별로 1개 센터 구축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센터 건립은 예산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기재부 또한 인정할 만한 정도 수준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해야만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미디어 교육 지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짓고, 특히 교육부와의 역할 구분을 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은 교육부에 위임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성인 대상의 미디어 교육을 강화한다면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현장에 가서 그 활동 상황을 보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사무처가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을 잘 마련하고 또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미디어 시설들이 각 부처별로 난립해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외에도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또 심지어는 방송사도 시청자들에게 방송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각 광역단체 지역별로 1개 정도의 미디어센터를 계속 확충해서 늘려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난립해 있으면 행정적으로나 예산상 뒷받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통합을 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이 어떻게든 성안이 되어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로 부처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입법한 예를 보면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관장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집행되는 또 집행기관인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원활한 행정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의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역미디어센터를 유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청자 미디어 복지에 기여하는 셈이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각 광역단체별로 1개씩 이상은 만들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득표활동의 일환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여하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연구반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니 연구반의 성과물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입법 발의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놓고서 방발기금을 집행하는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교육기관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연구반이 올 연말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로 한 것입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초안을 연말까지는 완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을 해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라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이 출범한 것이 200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대로라면 20년 만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모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권역별로 보면 아직도 6개 권역에 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지원하라고 했을 텐데 내년에 경남 한 곳만 예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작년부턴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종과 청주가 된 것입니다. 올 초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설명회를 듣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경남 한 군데서만 냈고, 그리고 경남 안에서도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창원을 선정해서 방통위에 통보를 했고 그것에 대해 방통위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창원을 최종으로 선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 되어 있는 곳은 내년 초에 또 설명회를 열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이나 미디어 교육이 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 지역의 청소년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올해도 많이 신청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자체에서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50~100억원 정도 안팎으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자체 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된 곳이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록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2020년쯤에 이것을 고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고, 올해는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단 지자체의 의지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인식이 미디어센터의 효용성, 필요성, 지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홍보나 설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쭙본 것입니다. 인식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타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여러 평가결과를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여수, 순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사는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서로 경합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방통위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과 광주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변함없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매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자체 분담을 요구했는데 조세관계법에 의해 소급해서 다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쪽으로 분담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당국에서는 부산과 광주는 예전 방송위원회 때 만든 시설이어서 전액 국비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리고 예산당국에서는 계속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을 50:5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고 60, 지방자치단체 40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비율은 최소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방통위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50:50으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권한을 행사 하면 미디어교육의 일원화라는 것이 굉장히 흔들릴 소지가 높습니다.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비율이 꼭 유지가 되도록 각별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권한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세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더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기 방통위에서도 시청자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재단 출범 등을 3기 방통위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기에 들어와서도 미디어 교육, 이용자 보호 이런 업무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곳이 바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3기나 4기 우리 위원회에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지능정보사회, 스마트 사회에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역량,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내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동시에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자들의 미디어 역량을 키워주는 미디어 교육이야말로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논의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어디가 주관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방송통신 위원회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정리된 사안들을 가지고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리실로 예를 들어 교육부 안, 당시에 입법 발의한 유은혜 의원께서 교육부 장관으로 가계십니다만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하면 위원장은 민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파악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20여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 때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해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리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주무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리해 준 내용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거론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이 어디입니까? 오프콤(Ofcom)이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오프콤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프콤 관련 업무, 그리고 그것의 모법인 커뮤니케이션법을 보면 영국의 오프콤이 미디어 리터러시, 특히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콤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백서가 매년 다 올라옵니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에서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예산 확충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센터를 한 곳씩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 그리고 장비 교체 문제들이 사실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처음으로 강사비가 인상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시급한 것이 장비교체 아니겠습니까? 첨단 미디어 관련된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장비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미디어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센터의 운영예산, 지금 평균 13억원이면 월 1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운영비, 교육예산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실제로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센터 운영의 내실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개별 센터의 운영예산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유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별로 센터별로 13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강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 전반적으로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각 노후화된 장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노후시설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고사항도 접수가 될 텐데 조금 전에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미디어교육기관으로 방통위로 정한다는 그런 사안이 있었으면 보고서 4쪽에 명기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보고내용대로라면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안 검토 중이다' 이런 것만 보고하게 되는 모양이 나오니까 문건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수정해서 접수하는 것으로...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저희가 국조실에 의견을 낼 때는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국정과제에서 저희가 미디어 교육의 주무부처로 정했다는 사실을 같이 전달하고 설명했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을 보고하는데 보고서에는 그것이 빠져 있으니 보고서에도 분명히 명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것을 챙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과 동일한 논의구조였습니다. 논의에 참여하는 각 기관도 동일했고, 그때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불러서 의견을 들었지요. 그래서 결론을 내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고서에 담겼는지 그때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시다만 어떻게 됐든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론은 방통위로 정리해 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의 판단을 보고서에 수정하고 보충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우리 방통위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 올해 연말까지 미디어 교육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 받아들여서 고삼석 위원이 제안하셨던 내용들을 보고서에 추가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앞날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또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센터 관련된 보고를 통해 들었듯이 시청자미디어센터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특히 미디어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고삼석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여론 형성은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합리적 기준과 토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 증폭시키는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 기반의 선호도 기준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유튜브는 콘텐츠의 소비 취향에 따라 이용자를 분절시키는 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취향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이른바 필터버블과 이로 인한 확증편향은 다양한 여론 형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각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언론의 오보와 허위조작정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언론의 오보는 내부 점검과 미디어비평,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저널리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조작정보는 일부 뉴스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나 이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왜곡된 정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권리지만 책임성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합니다. 비록 1인 미디어라 할지라도 미디어를 표방한다면 사실에 기반해서 공공성 추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디어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언론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자율적인 팩트체크 활동을 강화하면서 오늘 보고된 바와 같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더 보완되어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우리 방통위도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들과 국민 여론들을 종합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고 또 그렇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부작용은 막아야 되겠지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논의가 그동안에 있어 왔고, 심지어는 '방통위원장의 교체 배경에도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교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어떻게 근절하고 차단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위축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원론적으로는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별하는 메커니즘이 과연 행정부처인 방통위에서 하면 마치 시중에서는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을 한다,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해서 차단하고 드러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보더라도 방통위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면 대보십시오. 이 자리에 담당 국장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사무처장님 혹시 법령에 방통위가 그런 가짜뉴스를 판별해낼 수 있는 권한과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잠깐 여쭙보겠습니다.

○ 김재영 사무처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내용심의, 내용에 대한 판단 권한은 없고, 관련된 정책적인 입법지원, 또는 정책적인 지원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에 대한 판단, 판결주체로서는 방통위는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허위조작정보냐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판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 결정이나 또 방심위에서 프로그램 심의를 해서 이것은 현저하게 허위조작된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되어서 내린 결정 그 정도 수준이고,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진영대결이지요.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권에서 우파성향의 유튜브를 잡으려고 한다, 이런 향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동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 그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정권의 입맛대로 가짜뉴스를 척결하는데 방통위가 앞장섰다, 제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방통위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물론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직접 심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러한 심의기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불법정보 유통금지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책 권한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한 규제권한도 방통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장님께서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동안 허위조작정보, 통칭 언론에서 쓰는 가짜정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이것은 위원장님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요. 가짜뉴스부터 시작해서 허위조작정보, 또 혐오, 증오, 차별표현, 최근에 보면 주로 정치영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첨단 AI나 이런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언론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합니다만 우선 명확히 개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 6월에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들을 이용한 딥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보고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선거 때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여론의 왜곡,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혹은 통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치해야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이나 어떤 민간단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을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 기구인 AIBD가 주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통칭 페이크뉴스가 주요 의제가 되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IBD와 유네스코, 이런 국제기구가 주도해서 앞으로 AIBD에 들어가 있는 26개 회원국들이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페이크뉴스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그리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혐오 표현, 딥페이크 이러한 것들이 다 인터넷 SNS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대형 인터넷사업자인 그리고 SNS 사업자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사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들의 권한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글로벌 인터넷 SNS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하는 수준과 미국에서 하는 자율규제 수준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공적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백서를 내야 되고, 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부적절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

으로 필터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부가 특히 방통위가 나서서 내용을 판단하고 어떤 부분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건어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5·18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이 법원, 즉 사법부 판단으로 분명히 이것은 허위조작정보라고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혐오표현 그리고 완전히 의도인 허위조작 정보에 관련해서 행정부가 글로벌 사업자들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정책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규제 가능한 실행방법을 마련할 것인가에 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할 때 언론사에서 제기하는 오보는 저는 이것은 가짜뉴스에 포함시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인데 ‘뉴스’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도된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용어를 방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도 AI 기반으로 가짜뉴스에 관련된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규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위원장님만이 아니라 방통위 전체가 나서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건전한 여론형성, 건강한 공론장의 기능 활성화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사항은 다른 해외 여러 나라도 고민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뚜렷한 어떤 방안이 나와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결국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위조작정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방통위가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물론 사법부나 중앙선관위나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실정법적으로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연구모임이지요. 연구모임으로….

○ 김재영 사무처장

-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회의로 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전문가 회의인데 그것도 ‘자율규제’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참여하시는 회의주체들이 스스로 전문가 회의로 이름을 바꾼 바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이것이 왜냐하면 인터넷상으로 한번 확산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스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꼭 주도를 한다기보다 그와 관련된 여러 언론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팩트체크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포털도 있고 여러 곳에서 참여해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된 논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어떤 독재정권도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서 정권에 유리한 뉴스만 유통되게끔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정부 행정부처에서 걸러내는, 또 차단하는 이런 작업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민간 언론사의 어떻게 보면 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허 옥 위원님 말씀대로 오보가 아니라 언론사의 실수에 의한 의도된, 조작된 허위정보는 반드시 걸러내야겠지요.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판별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자칫 정부가 하면 독재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 통제, 만약 방통위가 거기에 앞장서게 되면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청와대 민정비서실 조사관들이 방통위를 방문해서 언론 오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대변인실 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보에 대해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지요. 그릇된 정보가 나가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을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직접 행정기관을 무슨 권한으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서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직접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것인가’ 하는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우려를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부위원장님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하게 되면 그것이 독재다, 이 부분은 저는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입법발의가 됐습니다. 그때 주로 거론되었던 법안이 무엇입니까? 전기통신사업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누가 그것을 관장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야당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년 전에는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셨는데, 그러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야당 의원들께서 정부로 하여금 독재를 하도록 그런 입법발의를 했다는 것인지, 그런 모순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용, 과정, 결과를 보지 않고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 그렇게 문제제기한다면,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논의는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말씀 다 하셨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저도 모처럼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명을 받고 청문회 때 저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만 사용을 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에는 허위, 오보라는 이야기지요. 거짓이라는 이야기이고, 조작이라는 개념에는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의도적 허위정보'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 그런 허위조작정보 내지는 극단적 혐오표현의 유통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 가짜뉴스로 바뀌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악의적 의도의 허위조작정보가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공론의 장을 해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

하신 그런 우려 또한 현재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역할들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통위 사무처도 이런 위원님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진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이 논의는 정리할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4분 폐회 】